







# 보도참고자료



## 2015. 9. 7. 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은행과,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		
책 임 자	이윤수 과장(2156-9810)	담당자	이인욱 사무관(2156-9811) 김윤희 사무관(2156-9812)	
	류찬우 국장(3145-8020)		임채율 부국장(3145-8022)	
배 포 일	2015. 9. 4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4매

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. 제목 : -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(70%) - 9.30~10.1 이틀간 일괄 신청 접수

- 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**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**시 적용할 **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함** 
  - \* <붙임> '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' 참조
  -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
    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,
  -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과 주요 배점을 신청접수 전에 공개하는 것임

<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>

- □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
  - ①자본금 규모(100점) ②주주구성계획(100점) ③사업계획(700점)
     ④인력·영업시설·전산체계 및 물적설비(100점) 등 총 1,000점임

- □ 또한,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(6.18) 및 인가설명회(7.22)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
- ①사업계획의 혁신성 ②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의 증대 ④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(500점)할 예정
- ※ 다만, 주요 평가항목내 '세부 평가항목의 배점'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## <평가방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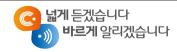
- □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\*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,
  - \* 대주주 결격사유, 경영건전성기준 준수,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
-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'평가위원회'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·평가
- 한편, 평가위원회는 금융, IT(보안), 핀테크, 법률, 회계, 리스크 관리,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될 예정 (명단은 비공개)
- □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
  - \*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

#### <향후 절차>

- □ 금융위원회(은행과)\*는 9.30(수)~10.1(목)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
  -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**접수일 18:00**까지 **예비인가** 신청서(3부)를 제출해야 하고
    - \* (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) 금융위원회 은행과 ☎02-2156-9817
-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, 금융법규 >해설서·매뉴얼 >업무해설서)에 공개(7.31)한 '은행업 인가매뉴얼'과 인가심사 Q&A를 참조
- \* (예비인가 심사관련 문의)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☎02-3145-8023
- □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**금융감독원 심사**(10월) 및 **평가위원회 심사** (11~12월)를 거쳐 **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의결**(12월)할 예정임
  -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·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
     ('16년 상반기 예상)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 (신청시기에 따라 변동)를
    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(본인가 후 6개월 이내)
  - ※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Q&A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fsc.go.kr



<붙임>

###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(안)

평가항목*	평가내용	배점	
🗓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			
자본금 규모(60)	•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할 예정인지 여부		
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(10)	•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지 여부	100	
추가자본조달계획의 적정성(30)	<ul> <li>설립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의 적정 여부</li> </ul>		
2]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			
대주주의 적격성(-)	•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에 부합하는지 여부	100	
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(100)	•개별 주주들이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 여할 수 있고, 주주구성이 금융·IT융합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	100	
③ 사업계획(주요 확인사항)			
사업계획의 혁신성(250)	•사업계획이 기존관행을 혁신(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 제시 등)하고,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		
사업모델의 안정성(50)	•사업모델이 은행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	500	
금융소비자 편익 증대(100)	•다양한 금융서비스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		
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(50)	•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,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		
해외진출 가능성(50)	•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의 보유 여부 등		
4 사업계획(기타 확인사항)			
사업계획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(40)	•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,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,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여부		
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기능성(40)	•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, 사업계획을 고려한 추정재무제표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여부		
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(-)	<ul> <li>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 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</li> </ul>		
리스크관리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(40)	•리스크관리체계 및 조직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	200	
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(-)	• 이사회 구성계획 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		
내부통제·준법감시체제 적정성(40)	• 내부통제·준법감시체계의 구성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	
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(-)	•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		
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(40)	•소비자 피해 예방·구제 방안의 적정 여부		
기 타(-)	•정판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, 감독기관의 감독·검시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		
5 인력·영업시설·전산체계 및 물적설비			
인력보유계획의 적정성(-)	•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	100	
영업시설 보유계획의 적정성(-)	•충분한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		
전산체계 등 그 밖의 물적설비 보유 계획의 적정성(100)	•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· 바이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한지 여부 등		
합계			

\*「임원 및 발기인」관련 사항은 본인가시 심사

<sup>\* (-) :</sup> 금융감독원에서 법령,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으로 배점은 없음